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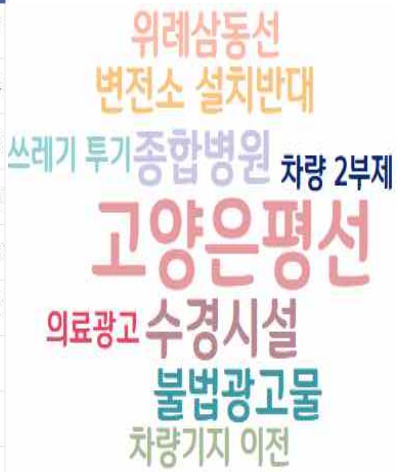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4월 2주차 동향 (4.6.~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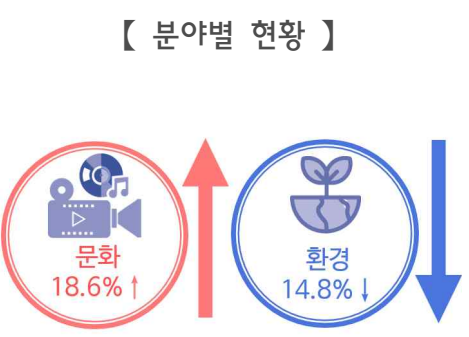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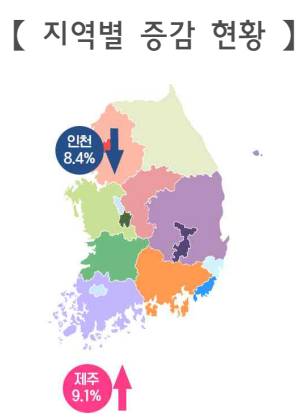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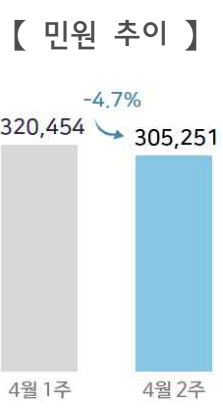
민원 동향

| 순위 | 민원 키워드 | 주요 내용 | 건수 |
|----|--------------|-------------------------|-------|
| 1 | 고양은평선 | 노선 연장 요청 | 3,797 |
| 2 | ◇◇ 수변공원 수경시설 | 설치계획 변경안 이행 요구 | 2,314 |
| 3 | ■■ 종합병원 | 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 1,712 |
| 4 | 불법광고물 |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 1,646 |
| 5 | @@@역 변전소 | 변전소 설치 반대 | 1,255 |
| 6 | 위례삼동선 | 위례신사선과 연계 요청 / 연계 추진 반대 | 1,202 |
| 7 | 차량기지 이전 | 인력 배치 및 사무공간 마련 요구 | 766 |
| 8 | 불법 의료광고 | 온라인 과대광고 등 신고 | 557 |
| 9 | 쓰레기 무단투기 | 무단투기 등 신고 | 521 |
| 10 | 차량 요일제 |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등 | 468 |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4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4월 2주차 민원은 305,251건(일평균 43,607건)으로 지난주(320,454건) 대비 4.7% 감소
- 지역별로는 제주(9.1%), 울산(2.9%) 증가, 인천(8.4%), 서울(7.4%)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관련 등 문화 분야 증가, 저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우려 등 환경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민원[156건]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시 법률 적용 범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포함할 것을 요청

※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법률안 제2조)

- **검토요청** 3월 31일 국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지도자의 범위에서 명백히 누락되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공공 전문기관으로,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평등 의식 제고, 성범죄 예방 교육, 성상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 안에서 저희는 ‘청소년지도자’에 속하지 못한 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명백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 지도 활동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법적 보호 체계 내로 편입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의 당연한 책무입니다.(4.7.)
- 저는 매일 학교와 지역사회를 찾아다니며 성평등 교육을 하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법의 보호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억울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 제2조 제5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단순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빠진다면 정말 너무나한 일이 아닐까요. 또한 현재 국회에는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도 계류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처우 개선에서는 빠진다는 것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4.7.)

■ (참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관련 언론보도

| | | |
|---|--|---|
| <p>오마이뉴스</p> <p>여야 의원 초당적 협력...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법' 공동 발의</p> <p>입력 2026.02.12. 오후 3:16</p>  <p>▲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 모습' (c)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p> <p>오마이뉴스(‘26.2.12.)</p> | <p>연합뉴스</p> <p>청소년지도자 보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책정</p> <p>입력 2026.03.31. 오후 5:39 수정 2026.03.31. 오후 5:40</p> <p>청소년지도자 법률 제정안·청소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p> <p>(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p> <p>성평등가족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연합뉴스(‘26.3.31.)</p> | <p>뉴스1</p> <p>청소년지도자 처우 첫 법적 보장...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p> <p>입력 2026.03.31. 오후 5:34 수정 2026.03.31. 오후 5:35</p>  <p>(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청소년보호시설 등에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처음으로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p> <p>뉴스1(‘26.3.31.)</p> |
|---|--|---|

□ ◆◆시 ◇◇ 수변공원 수경시설 변경안 유지 요청[2,314건]

- 통학로 한 가운데 계획된 기존 수경시설 조성 원안에 반대하고, 주민들이 합의한 변경안 유지를 요청

- 수경시설 조성 관련, 이미 합의된 변경안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요청합니다. 기존 수경시설 원안은 □□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한가운데에 위치해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형태여서 학부모·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지난 '26.3.4. 시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수경시설 변경안에 공식적으로 협의·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초 통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근 단지 주민들 중심으로, 수경시설 위치를 원안으로 되돌리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그 어떤 시설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타협 불가능한 절대 가치입니다.(4.8.)
- 수경시설 변경안은 기존면적 599㎡보다 넓어진 606㎡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 발생한 민민갈등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한 명분없는 원안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26.3.4. 합의한 변경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록 공개를 통해 단지간 오해 및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4.8.)

□ ●●건설 약속불이행 조사 요청[230건]

- '추가 입주지원 혜택 제공 시 소급적용'이라는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등기 절차를 진행한 입주민들이 약속불이행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

- 건설사는 '25.7.25. 대표 직인이 날인된 공식 공문을 통해, “추가 입주지원 혜택이 있을 경우 기존 등기완료 세대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등기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계약자들에게 3차 입주지원 혜택을 비밀리에 제공했고, 기존 등기완료 세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항의에도, 건설사는 소급 적용을 거부하는 입장입니다.(4.11.)
- 기존 등기완료 세대와 달리 일부 계약자들은 3차 혜택을 통해 중도금·잔금 관련 채무 전액 면제 등 훨씬 유리한 조건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설의 공식 공문을 믿고 협조한 계약자들이 결과적으로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형평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으나, “내부지침”을 이유로 소급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부지침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공식 확약을 뒤집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자들의 신뢰를 침해하고 계약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합니다. 특히 건설사를 믿고 먼저 협조한 다수의 기존 등기완료 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4.7.)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 페이지 | 제목 | 민원번호 | 소관기관 |
|-----|----------------------------------|------------------|--------|
| 2P |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관련 민원 | 1AA-2604-0281073 | 성평등가족부 |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